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마련, 휴관일 지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휴양림 가동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이용 시간 개정(안 제5조)
나. 입장료 징수조항 삭제(안 제6조, 별표1)
다.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2)
라. 휴관일 지정 신설(안 제13조)
마. 입장료 용어 삭제 및 기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40600(2018. 7.17.)〕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5230(2018.7.18.)〕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2018. 7.20.~2018. 8.1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사용료”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세미나실 및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 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중 “봉두리 산110번지”를 “사더래길 144”로 한다.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 등) 세미나실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일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사용 개시일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3. 세미나실 이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의 “군수”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주 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를 “군수”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자들”을 “사람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시설사용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이용 전에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을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로 하고,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의2와 같다.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시설사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부터 제3항까지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각각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을 “(휴관일 지정 및 시설사용 제한)”로 하고,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휴양림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휴양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위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세미나실	67.8㎡	1실/4시간	50,000	30,000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제1휴양관	50.3㎡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8실
숲속의 집	49.8㎡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2실
	66.8㎡형 (8인기준)	1동/1일	150,000	90,000	2실
제2휴양관	28.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29.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36.2㎡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1실
	43.1㎡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2실

비고

1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1일 ~ 8월 31일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2 . “비수기 주중”이란“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3 . 숙박시설(숲속의집, 휴양관) 이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5:00부터 퇴실일 12:00까지이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별표1의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자	감면율	비고
시설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30%	※ 비수기 주중에 한함.
	등록장애인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하는 자	30%	
	다자녀 가정	30%	
	성주군민	30%	※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한함.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	50%	

비고

1.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수기 주중 및 주말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나.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경상북도 할매 할배의 날 주간”이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속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마.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바. “협약(MOU) 체결 기관·단체”라 함은 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를 말한다.

사. “성주군민”은 성주군에 주민등록 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아. “성주군 관내 초·중·고 학생”이란 성주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성주군수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설사용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사용료”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세미나실 및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 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 제>
2. “시설사용료”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휴양관, 숲속의 집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산110번지 일원에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사더래길 144 ----------.
제4조(시설의 이용 등) ① 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숲속의 집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 등) 세미나실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시간) ①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시설이용 시간) ① ----------.
1. 숲속의 집 이용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	1. 일일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신 설>	2.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사용 개시일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신 설>	3. 세미나실 이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 시설사용료----------.
② 성주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 시설사용료----------사람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입장료는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는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이용 전에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이용 전에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있다. 이 경우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의2와 같다.
<신 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 시설사용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② ---------- 시설사용료----------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③ ---------- 시설사용료---------- ---------- ---------- ----------.
제13조 (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	제13조 (휴관일 지정 및 시설사용 제한)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할 수 있다. 1. 휴양림 개 · 보수 시 2.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신 설>	1.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휴양림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휴양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위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